

보도시점 2023. 11. 22.(수) 배포 2023. 11. 21.(화)
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11.22)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추가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통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가구를 중점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발굴하고, 공적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와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둘째, 한파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경로당에 월 40만 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로 새로 지정하여 지원한다.

셋째,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 취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확대하며,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한,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취약계층에게 긴급돌봄과 일상돌봄을 적극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 라고 밝혔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겨울철 취약 계층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과 함께한 11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공무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우편집배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모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한다.

*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 추가정보 활용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안전망(27.4만 명)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안전망(6.5만 명)

또한,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 중앙부처 360여 개, 지방자치단체 4,000여 개 복지서비스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등 가입자(1,019만 명)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사전 안내

2.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23.11),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23.11),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23.11)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확대한다. 경로당 6만 8천 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천 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9만 개소에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4만 원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2만 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1만 원, 연탄쿠폰***은 54.6만 원까지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등에게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에 등유 구입비 지원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장애인 등에게 연탄구입비용 지원

4.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32%’로 확대하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하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하여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한다.

* 전 국민 중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개념으로 정부 73개 복지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

** 4인가구 기준 162.3만 원 ('23년) → 183.4만 원 ('24년), 21.1만 원 인상

*** 초등학생 46.1만 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

5. 겨울철 함께하는 동행문화 조성

민간영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23.12~'24.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2024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추진방향
2.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3.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포스터

담당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문식 (044-202-3020)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하늘 (044-202-3009)



붙임 1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 지원대책 추진방향

목표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기본
방향**

- ◆ [촉촉한 위기발굴] 선제적 발굴 · 안내를 통해 위기 악화 예방
- ◆ [두터운 민생지원] 대상별 · 위기상황별 민생안정 지원 강화
- ◆ [따뜻한 겨울나기]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추진
과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 지원**

- ▶ 빅데이터 기반 사각지대 발굴
- ▶ 인적안전망 활용 위기가구 발굴

**대상별
맞춤 지원**

- ▶ 독거취약 어르신
- ▶ 노숙인 및 쪽방주민
- ▶ 취약 아동

**한파 대비
난방 · 건강지원**

- ▶ 취약계층 난방지원
- ▶ 겨울철 질환 예방
- ▶ 한파 대비 시설 안전점검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 ▶ 저소득층 생계지원
- ▶ 주거위기가구 지원
- ▶ 금융취약계층 지원
-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 돌봄취약계층 지원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 ▶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 자원봉사 활성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2023. 11. 2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추진배경	1
II. 추진방향	2
III. 추진과제	3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3
2. 대상별 맞춤 지원	5
3. 한파 대비 난방·건강지원	7
4.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9
5.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12
IV. 향후계획	13
[참고1] 추진과제 목록	14
[참고2]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6

I. 추진배경

- 겨울철은 일자리가 감소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문제로 저소득층 및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

* 월별 고용률(%) 추이: 62.7('22.11월) → **61.3('22.12월)** → **60.3('23.1월)** → **61.1('23.2월)** → 62.2('23.3월) → 62.7('23.4월) → 63.5('23.5월)

- 한파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의 건강과 안전 문제도 증가
- 원유 등 에너지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은 이번 겨울철에도 계속될 전망

* 원유(두바이, \$/배럴) : 90.9('22.9월)→ 80.4('23.1월) → 75.0('23.5월) → 89.8('23.10월)

** '23년 1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 연료비 지출 +23.5%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또한, 학교 방학, 한파로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독거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의 사회적 고립 위험도 증가

- 이번 겨울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맞이하는 동절기로,

➢ (고물가) '23.10월 전년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3.8%, 전기·가스·수도 +9.6%
(고금리) 기준금리 추이 : 1.25% ('22.1월) → 2.25% ('22.7월) → 3.50% ('23.1월~)

-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겨울철 취약계층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집중적 지원이 필요

⇒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①사각지대 발굴, ②취약계층 민생지원, ③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

II. 추진방향

목표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기본 방향

- ◆ [좁은 위기발굴] 선제적 발굴·안내를 통해 위기 악화 예방
- ◆ [두터운 민생지원] 대상별·위기상황별 민생안정 지원 강화
- ◆ [따뜻한 겨울나기]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추진 과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 ▶ 빅데이터 기반 사각지대 발굴
- ▶ 인적안전망 활용 위기가구 발굴

대상별
맞춤 지원

- ▶ 독거·취약 어르신
- ▶ 노숙인 및 쪽방주민
- ▶ 취약 아동

한파 대비
난방·건강지원

- ▶ 취약계층 난방지원
- ▶ 겨울철 질환 예방
- ▶ 한파 대비 시설 안전점검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 ▶ 저소득층 생계지원
- ▶ 주거위기가구 지원
- ▶ 금융취약계층 지원
-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 돌봄취약계층 지원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 ▶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 자원봉사 활성화

III. 추진과제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부)

◆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하겠습니다.

①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 (사각지대 발굴)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 점검('23.11~'24.3)

* (위기정보) 단전·단수·건보료 체납·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18개 기관 44종 정보

** 위기정보를 39종에서 44종까지 확대(①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수도요금 체납, ③가스요금 체납, ④채무조정 중지자, ⑤고용위기)하여 발굴 강화('23.11)

- (겨울철 중점발굴) 약 30만명 중 겨울철에 특히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약 8만명, '23.11~'24.3)

* (생활요금 체납가구)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정보(11월 신규추가정보) 활용

** (취약계층 집중발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키요인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와 주거취약가구(전월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집중점검

② 인적 안전망 활용 사각지대 발굴

- (지역사회안전망) 지역사회복지협의체(229개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27.4만명)을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민관협의기구로 지역 내 민관 복지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자체 제보, 고위험 가구 모니터링 등 지원

* 우체국, 약사회 등 생활업종 종사자 확대 지속 추진 및 인적안전망의 위기가구 발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23.12)

- (좋은이웃들) 지역주민을 '좋은이웃들' 봉사자(6.5만명)로 위촉하여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 * 사회복지협의회에 좋은이웃들 봉사자 교육용 '위기발굴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지원('23.10)
-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팀 (3,399개, '23.6)을 통해 취약가구 집중 모니터링·상담
 -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실시 및 필요시* 생활지원비, 의료비 등 추가 지원
 - * 타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지원 이후 가구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구당 50만원, 예외적 상황 최대 100만원)

3 복지서비스 안내 강화

- (복지정보 제공) 복지로*·복지멤버십**을 통해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온라인 신청 안내
 - * (복지로) 중앙부처 360여개, 지자체 4,000여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온라인 신청 기능 제공
 - ** (복지멤버십)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등 가입자(1019만 명, '23.8 기준)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자·복지로로 사전안내
- (국민대상 홍보) 취약계층 이용 확대를 위해 대중이용시설, 대중매체에 복지로 및 복지멤버십 가입 홍보영상 송출*('23.11.~12)
 - * KTX,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철, 유튜브 등에 복지로 홍보영상 송출
- (취약계층 대상 안내)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으로 발굴된 대상자에게 복지로 및 복지멤버십 안내
 - *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신청, 복지멤버십, 복지 도움 요청 등 안내
- (안내사업 확대) 복지멤버십 안내사업 76종에서 80종으로 확대('23.2~)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도 추가 확대 추진('24~)

2 대상별 맞춤 지원 (복지부)

◆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겨울철 취약계층을
춹춹히 살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

- (취약노인 보호대책 수립) 독거·취약 어르신의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중심으로 보호대책 수립·시행('23.11)
 - (안전확인) 한파 및 대설특보 발령 시 생활지원사(3.4만명)를 통해 독거 등 취약 어르신 안전확인 강화* 및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체계 운영**
 - * 주거상태 및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 고려하여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서비스 강화
 - ** (피해상황 보고체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시·군·구/광역지원기관 → 시·도/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복지부
 - (난방용품 지원) '독거노인 사랑 잇기' 등 민간후원 및 연계를 통해 온수매트, 겨울이불 등 난방용품 전달 및 한파대응 홍보물 배포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를 설치(총 30만 가구, ~'23년말)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
 - *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독거 노인가구에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 119신고하는 장비
 - 겨울철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대상자를 집중발굴, 한파 등 동절기 안전관리강화 대상군* 설정 및 안부확인 강화 운영 추진('23.11)
 - *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활동 제한 및 우울증, 치매 어르신 등
- (저소득 치매노인지원)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회 어르신 인식표 보급 등 실종치매노인 발생 예방과 복귀 지원
 - *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 (지원금) 검사비 최대 15만원, 치료관리비 최대 월 3만원
 - 겨울철 한랭질환 위험이 큰 실종치매노인 발생 예방을 위해 ▲배회 어르신 인식표 보급, ▲지문 등 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대여 등 지원
 - * 실시간으로 환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 기기(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등)

□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 대책) 겨울철 거리노숙인, 쪽방 주민 등 보호를 위해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추진('23.11~'24.3)
 - * (추진방향) ①지자체의 선제적 위기대응능력 강화, ②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복지 자원 사전확보, ③감염병 대응 철저 등 집중 추진
- (위기대응능력 강화) 거리순찰·상담반 운영, 간호사 등 전문인력 쪽방촌 방문상담 강화,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공동대응반 운영
- (위기지원 서비스) 노숙인 응급잠자리* 동절기 이용 기간 탄력 운영 (연속 최대 50일→무제한), 구호물품·급식 지원 등 신속한 보호서비스 지원
 - * 노숙인시설 내 수면공간, 노숙인 밀집 지역에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쪽방·여인숙·고시원 등을 임대하여 노숙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잠자리
- (시설점검 및 보수지원) 화재·동파 등 예방을 위해 노숙인시설 및 쪽방촌 시설물 점검(민관합동점검,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개·보수 지원
- (감염병 대응) 노숙인 대상 독감 예방접종 독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의료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및 개인 방역물품 지원

□ 취약 아동

- (위기 아동 발굴)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및 서비스 연계(3만명, '24.1~3)
 - *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
- (안전 전수조사)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대상 소재·안전 전수 조사 실시(3만명, '23.10~12), 추가지원 필요시 복지서비스 연계
 - * 만 3세 선정이유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본격 진입 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결식 방지) 겨울방학 시작 전 방학기간 급식 공백 대비하여 겨울 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23.11)
 - 지자체별 겨울방학 아동급식 세부 지원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아동급식 인프라 확충 및 식중독 예방 점검 실시

3 한파대비 난방·건강 지원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질병청, 여가부)

◆ 에너지 바우처, 연료별 난방지원으로 한파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난방지원

- (저소득층 지원)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비용 지원 강화, 요금 감면 및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가구당 평균 30.4만원 까지 지원('23.10~'24.4)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 난방비 지원
 - (가스·열요금 할인)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요금 감면('23.12~'24.3)
 - *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 공급권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상생기금 활용 협의 추진
 - (등유·LPG 난방비)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2만원까지 난방비 지원('24.1~)
 - (등유바우처·연탄쿠폰) 세대 당 등유* 64.1만원, 연탄** 54.6만원 각각 지원('23.11~'24.4)
 - * 등유 사용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 지원(4.5천가구)
 - ** 연탄 사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 지원(4.6만가구)
 - (난방효율 개선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3.6만 가구에 단열, 창호·바닥 시공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평균 243만원 지원*
 - * ('23년) 3.43만가구, 835억원 → ('24년) 3.6만가구, 875억원
- (사회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확대
 - (경로당) 전국 경로당(6.8만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된 월 40만원 지원('23.11~'24.3)
 - (생활·이용 시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약 8천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 추가 지원('24.1~2)
 - * 생활시설 : 30만원(1~50인), 50만원(51~100인), 100만원(101인~) / 이용시설 : 30만원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약 2.9만개소)을 신규 포함하여 요금감면 지원 확대('23.12~)

□ 겨울철 질환 예방

- (예방접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시 질병부담이 큰 어르신(65세 이상) 대상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시행*('23.10~'24.4)
*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2만개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동시접종 권고
- (한랭질환 감시) 한파 기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정보 공유로 건강피해 최소화('23.12~'24.2)
* 전국 약 500여개 응급실 기반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여, 한랭질환자 발생현황 신속히 파악 및 관계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
- (방문건강관리) 한파에 대비하여 건강 취약계층*에 전화·방문을 통해 혈압·혈당 등 겨울철 기초건강 집중 모니터링, 교육·홍보 자료 배포
* ①만 65세 이상 노인 ②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③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④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등
- (취약계층 한파대응용품 지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100가구 대상 한파 대응요령 안내 및 한파대응 용품* 지급('23.11~12)
* (단열개선) 에어캡 문풍지 / (방한용품) 난방텐트, 이불 생수, 텀블러 수면양말 구마개 목도리 장갑 등

□ 한파 대비 시설 안전점검

- (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 대상 폭설·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등 안전점검 실시('23.11~'24.1)
*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약 2만 개소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기관 수
시설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점검대상에 포함된 모든 사회복지 시설, 안전점검표 작성	21,852개소
지자체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4,046개소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가스, 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115개소

4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금융위, 고용부)

◆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소득·주거·금융·근로 등 분야별로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생계지원

- (기초생활보장) '24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역대 최고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확대('24.1~)
 - * '24년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월 183만원으로 월 21만3천원(13.16%) 인상, 이는 지난 정부 5년간('18~'22) 인상액 19만6천원보다 높은 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정부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6.09%(4인 가구)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
 - *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장애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 서비스 등
 - ** ('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23년 540만원 → '24년 573만원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16) 4.00% → ('17) 1.73% → ('18) 1.16% → ('19) 2.09% → ('20) 2.94% → ('21) 2.68% → ('22) 5.02% → ('23) 5.47% → ('24) 6.09%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p 상향하여 지원 대상 확대*
 - * 기준 중위소득 인상선정기준 상향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10만명 증가('23) 160만명 → ('24) 170만명) 예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완화하여 임차료(월 16.4~62.6만원), 주택수선 등 주거 지원 확대('24.1~)
 - 교육급여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초46.1만원, 중65.4만원, 고72.7만원)까지 평균 11.1% 인상하여 저소득층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24.3~)
 - 민생 현장 홍보를 통해 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급여 대폭 인상 등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집중 안내('23.11~)

※ '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달라지는 정책

- ▲ (선정기준 상향) 생계급여(기준 중위 30%→32%), 주거급여(기준 중위 47%→48%) 선정기준 상향
-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자동차, 생계용 자동차 등 기준 완화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30세 미만(현행 24세 이하) 청년까지 근로소득 추가공제 확대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 및 생계지원금 인상을 추진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로 위기 발생 시 신속 지원
 - * (구성) 위원장(시군구청장) 등 15인 이내, (역할) 긴급복지 선지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 등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 지원('23.10~'24.3)
 - '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에 연동하여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인상(4인가구, 13.16%) ('24.1~)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 (6,992명, '23.8 기준)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안내·지원('23.9~12)
 - * 주민등록 사실조사·신고 등으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2호)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동일 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1인당 의료비 합산금액으로 기준 변경('24.1)
 - * 의료비 산정방식 : (현행)동일 질환별 계산 → (개선)모든 질환 합산 계산

□ 주거위기가구 지원

- (긴급지원주택) 재해 등 불의의 상황으로 퇴거 위기 등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지원 주택 임시 제공*(최대 6개월)
 - * 주거위기가구 임시 거처 운영 수요 파악('23.11) 및 긴급지원주택 신속 제공
-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위기상황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 (지원대상) 재해, 가정폭력,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 대상자 등
- (비주택거주자 이주 지원) 쪽방·노후 고시원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주거 제공
 - * (지원대상)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보증금(50만원 정액) 및 이사비·생필품(40만원내 실비)도 지원하여 이주비 부담 완화
 - * 민간임대 이주 시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최대 8천만원 보증금 대출 지원

□ 금융취약계층 지원

- (소액생계비 대출) 소액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지원('23.3~)
 - *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지원
 -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10%이하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대출
- (복지-금융 서비스 연계) 지자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서비스 의뢰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금융 및 복지서비스 양방향 연계
 - * 채무조정, 고용 및 복지 연계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전국 50개소, '23.10월 기준)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노인일자리) '24년 노인일 자리를 역대 최대로 확대*하고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4년 참여자 조기 모집 추진('23.12)
 - * ('23년) 88.3만명 → ('24년) 103만명 (+14.7만명, +16.6%)
- (장애인일자리) '24년 장애인 일 자리를 2천명 확대하고, 겨울철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참여자 조기 선발('23.11~12)
 - * ('23년) 3만명 → ('24년) 3.2만명 (+0.2만명, +6.7%)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2만 2천명 확대('24.1~)
 - * 법정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 초과 고용 시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 지급

□ 돌봄취약계층 지원

- (긴급돌봄·일상돌봄) 노인,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서비스 적극 연계 추진
- (장애인) 폭설·한파 등 재난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돌봄 강화
 - * 월 313천원(20시간),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나눔문화를 조성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희망2024 나눔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연말·연시 집중 모금 ‘사랑의 온도탑’ 추진(‘23.12~’24.1, 4,349억 목표)
- (취약가구 긴급지원) 겨울철 취약가구* 대상으로 생계비, 혹한기 난방비·용품, 생필품 등 155억원 규모 집중지원(‘23.10~’24.5)
 - * 위기가구,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 가구 등
- (결식예방) 동절기 재난재해 및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결식 예방을 위해 긴급 지원*(‘23.10~’23.12)
 - * (지원 목표) 복지소외계층, 저소득 가정 결식 아동 등 6,000명
- (사랑나눔실천 캠페인) ‘23년 연말연시 공공부문 솔선수범 사랑나눔실천 캠페인(모금펀드) 추진(‘23.12~’24.2)
 - * 모금펀드 : 꿈나무(아동청소년), 은빛노을(어르신), 행복한동행(장애인), 첫걸음(시설생활인), 희망나눔(희귀난치질환자), 고향사랑(지역사회), 좋은이웃들(소외계층), 푸드뱅크(결식)

□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자원봉사센터(전국 246개소)와 자원봉사수요처(사회복지시설·민간기업 등)를 연계하여 겨울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 (자원봉사 주간 운영)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24.1.30~’24.2.8)
 - *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24.1.30~’24.2.8., 10일간)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떡국나눔, 주거환경 개선, 말벗 봉사 등 프로그램 운영

IV. 향후 계획

① 대국민 홍보 추진

-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민생 현장 홍보('23.11~12)
- 대중이용시설·대중매체 등 '복지로', '복지멤버십' 홍보영상 송출('23.11~12)
- 포스터 제작·배포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집중 홍보('23.11~12)
- '희망 2024 나눔캠페인' ('23.12~'24.1)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23.12.1.)
-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24.1.30.~'24.2.8.)

②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관리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대책 전파 및 협조요청('23.11)
 - 17개 시·도 지자체별 자체 발굴·홍보계획 수립 요청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 총괄 보고('24.3)
-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실적·사례 지자체 표창('24.4)

③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23.10~'24.4), 동절기 가스요금할인('23.12~'24.3)
- 독거노인 일일안전 확인('23.11~ '24.2),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지원 ('23.11. ~ '24.3)
-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선발 ('23.11~12)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23.9~'24.4) 및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23.12~ '24.2)
-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23.11~'24.3)
-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23.11~'24.1)

참고1

추진과제 목록

추진과제 목록	소관부처
1.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1) 빅데이터 기반 사각지대 발굴	
(1)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위기가구 발굴	복지부
2)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지원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기가구 모니터링	복지부
(2) 좋은이웃들로 위기가구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복지부
(3) 찾아가는 복지상담으로 발굴된 위기가구 집중관리	복지부
3) 복지서비스 안내 강화	
(1) 복지로 및 복지멤버십으로 복지급여·서비스 선제 안내	복지부
2. 대상별 맞춤 지원	
1) 독거·취약 어르신	
(1) 취약노인 보호대책 수립·시행	복지부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위기상황 신속대처	복지부
(3) 저소득 치매노인 지원 및 어르신 인식표 보급	복지부
2) 노숙인 및 쪽방주민	
(1)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시행	복지부
(2) 지자체별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집중 보호 대상 순찰·상담 강화	복지부
(3) 응급잠자리, 구호물품, 급식, 감염병 예방 등 보호 서비스 지원	복지부
3) 취약 아동	
(1) 위기아동 발굴	복지부
(2)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실시	복지부
(3) 결식아동 급식 지원	복지부
3.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1) 취약계층 난방 지원	
(1)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산업부
(2)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복지부산업부,여기부
2) 겨울철 질환 예방	
(1)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질병청
(2) 한랭질환 집중 감시체계 운영	질병청
(3)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복지부
(4) 한파영향 취약계층 한파대응용품 지원	환경부

추진과제 목록	소관부처
3) 한파 대비 시설 안전점검	
(1)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대상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복지부
4.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1) 저소득층 생계지원	
(1)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로 보장성 강화(생계·주거·교육)	복지부,국토부,교육부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연료비 추가지원	복지부
(3) 기초연금 미수급자 지원	복지부
(4)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복지부
2) 주거위기가구 지원	
(1) 긴급지원주택 지원	국토부
(2) 주거위기가구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토부
(3)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국토부
3) 금융취약계층 지원	
(1) 소액생계비 대출	금융위
(2) 지자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계·지원	금융위
4)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1) 노인일자리 확대 및 조기모집으로 소득공백 완화	복지부
(2)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복지부, 고용부
5) 돌봄취약계층 지원	
(1)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 연계	복지부
(2)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지급	복지부
5.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1)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1)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운영	복지부
(2) 취약계층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 결식 예방	복지부
2)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1) 지역자원봉사센터 중심 자원봉사 연계	행안부
(2)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	행안부

참고2

전년 대책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2-'23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23-'24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 위기정보 39종 입수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	· 위기정보 44종 입수
	복지멤버십	· 복지서비스 안내 76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2.11.24)	· 복지서비스 안내 80종
대상별 맞춤형 지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 20.5만 가구 설치 ('22년말)	· 30만 가구 까지 확대 (~'23년말)
한파대비 난방·건강 지원	에너지바우처	· 지원금액 15.2만원 → 30.4만원*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대책」(23.1.26)	· 지원금액 30.4만원
	등유바우처·연탄쿠폰	· 등유 31만원 → 64.1만원* · 연탄 47.2만원 → 54.6만원*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22.12.28)	· 등유 64.1만원 · 연탄 54.6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 월 37만원	· 월 4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감면	-	(신규) ·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 추가
	사회복지시설 난방지원	· 월 30~100만원*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22.12.28)	· 월 30~100만원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 (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541.0만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최저교육비의 90% 수준	· (기준중위소득) 4인기준 573.0만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
	긴급복지	· (생계지원금) 4인기준 162.0만원 · (연료비) 11만원	· (생계지원금) 4인기준 183.4만원 · (연료비) 15만원
	재난적의료비	· (산정기준) 동일 질환	· (산정기준) 1인당 의료비 합산
	돌봄지원	-	(신규) · 돌봄취약계층 긴급돌봄, 일상돌봄 연계
	노인·장애인 일자리	· (노인) 88.3만개 · (장애인) 3.0만개	· (노인) 103.0만개 · (장애인) 3.2만개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	희망나눔 캠페인	· 4,040억원 모금목표	· 4,349억원 모금목표
	취약계층 긴급지원	· 140억원 규모	· 155억원 규모



보건복지부



복지로

행복을 연결합니다



힘이되는 129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행복을 전해주세요

추위질수록 심해지는 생활고를 덜 수 있도록
힘들다 말하기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함께 찾으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란?

 소득감소, 실직, 휴업, 폐업 등 생계 곤란 가구	 빛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겨울철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노숙인과 쪽방, 노후 고시원 등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 취약 가구
---	--	---	---	---

도움 요청하는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120)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도움요청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	--	---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긴급복지지원(동절기 난방비용 포함) 신청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129)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가 걱정일 때 : 에너지바우처 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1600-3190)